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의 안 번 호	737
------------	-----

제출년월일 : '98. 12.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정 이유

- 음식물 쓰레기는 대부분 매립 처리되고 있어 악취 및 침출수 발생으로 토양, 대기, 수질오염 등 종체적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원이 낭비되고 있어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배출 방법, 감량의무이행 사항 등 의 기준을 제정함으로써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 골자

-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 및 수거방법 제정(안 제5조)
-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감량의무 이행방법을 정하고 감량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안 제6조)
- 음식물 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하고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활용하거나 감량화기기·시설을 설치토록 함(안 제10조)
- 음식물 쓰레기처리 등의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사용시 봉투판매 가격으로, 전용수거용기 사용시 세대별 또는 월간 배출량등에 따라 차등 징수토록 함(안 제11조)
-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안 제13조)
 -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 방지도모

□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제5호가목

□ 관련사업 계획서

○ 사업 개요

- 사업명 :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 위치 : 본오동 665-55번지 일원(시화매립장내)
- 시설규모 : 70톤/일

○ 추진사항

- | | | |
|----------------------------|-------|-------------|
| ○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 확정 | ----- | '97. 3 |
| ○ 퇴비화 기술공모(20개업체에서 기술공모접수) | ----- | '98. 1 |
| ○ 기술공모서 최종심사(영창건설외 5개업체) | ----- | '98. 4. 14 |
| ※ 최종 심사결과 : 코오롱엔지니어링 | | |
| ○ 실시설계서 중간보고회 개최 | ----- | '98. 6. 26 |
| ○ 설계심의 완료 | ----- | '98. 9. 8 |
| ○ 공사 계약 | ----- | '98. 11. 17 |

□ 예산수반사항

○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설치 : 3,000,000천 원

(도비 : 1,150,000천 원 시비 : 1,850,000천 원)

○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차량 : 300,000천 원

(도비 : 63,000천 원 시비 : 237,000천 원)

○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 : 100,000원

(도비 : 26,105천 원 시비 : 73,895천 원)

□ 입법예고사항(또는 사전절차 관련사항)

○ 입법예고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일자 : '98. 10. 29. ~ 11. 19(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음식물 쓰레기 관리업무추진 철저」 공문(환경부.폐관67500-824.1998.6.12)
-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준칙안(환경부 1998.1)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등을 말한다.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 규칙 별표4 제5호의 가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사료화·소멸화로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 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의 관할 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등) ①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시장은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제4조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는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 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한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발효 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전용봉투 또는 지정된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제1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제4조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9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쓰레기를 담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하여야 한다.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지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 감량처리할 때에는 감량화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대책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 제2항제3호의 규정 및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대별 일괄 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거나 세대별 일괄로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⑤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 수거하는 지역과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제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자원화시설 대행업체로 하여금 직접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금액은 시장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12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다량 음식물쓰레기배출자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및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적정 재활용여부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위탁재활용 개시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자원화와 관련된 기술·인력을 갖춘 민간업체등에 위탁운영토록 할 수 있다.
- ②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는 법·령·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산시지방세징수규칙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방법

(제4조 제1항과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방 법
음식물류	-식품쓰레기 -조리전·후 음식찌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행구어 배출 - 비닐·병뚜껑·페각류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후 배출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제14조와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 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상
폐기물 관리법	1.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배출 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 15조관련)			
	가. 음식물쓰레기를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5	10	20
	나.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하는 경우	5	10	20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등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 관련)			
	가.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20	50	100
	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연간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	20	30
	3.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6조제2항관련)	30	50	100

<별지제1호서식>

(제7조 관련)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사업장 규모	<input type="checkbox"/>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	명
	<input type="checkbox"/> 음식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m ²
	<input type="checkbox"/>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m ²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m ²
	<input type="checkbox"/>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음식물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계획

음식물쓰레기 배출 예상량		kg/월				
자가감량 처리계획	감량 처리			부산물 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설치신고 일자	처리량	부산물 발생량	처리방법
	kg/일		kg/월	kg/월		
자가재활 용계획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kg/월					
위탁재활 용계획	위탁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위탁업소명	업종	위탁업소 주소·전화	
	kg/월					

안산시폐기물관리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안산시장 귀하

<별지제2호서식>

(제7조 관련)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 kg)

연월일	발생량	자 가 감 량			재활용			
		자가감 량방법	자 가 처리량	처리량 누 계	재활용량	재활용방 법	재활용자	누 계

<작성요령>

-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제3호서식>

(제7조 관련)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							
제 신 출 고 자 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		
사업장 규 모	<input type="checkbox"/>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			명			
	<input type="checkbox"/> 음식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m ²			
	<input type="checkbox"/>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m ²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m ²			
	<input type="checkbox"/>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			kg/년				
처 리 실 적							
자가처리	감량처리	처리시설 능력 (kg/일)	연 간 처 리 량	부산물처리			
				부산물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자	
재활용	자가재활용의 경우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재활용 방법	위탁량	재활용 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 전화
위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안산시장 귀하							